

#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6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0. 1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0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10. 2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 김경숙

### 가. 제안이유

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전문적·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1) 민간위탁의 목적

-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실있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
- 운영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

## 2) 민간위탁 내용

### - 위탁운영 시설현황

- 시설명 : 염리종합사회복지관
- 위치 : 마포구 염리동 14-11 일원(염리3구역)
- 시설규모 : 연면적 8047.01㎡, 규모 지하2층, 지상4층
- 주요시설 : 아이돌봄센터, 키움센터, 장애인보호시설, 데이케어센터, 프로그램실, 상담실 등

### - 위탁사무 범위 :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
### - 위탁기간 : (예정)2021.7.1. ~ 2026.6.30(5년)

### 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### -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구성)

[표1] 위치도



[표2] 건축개요

- 사업기간 : 2016. 7. ~ 2021. 6.
- 총 사업비 : 25,128백만원

구 분		내 용		
용 도		노유자시설, 제1종근린생활시설		
사 업 규 모	대지면적	2,325.20㎡	건축면적	1,373.54㎡
	연 면 적	8047.01㎡	규 모	지하 2층, 지상 4층
	용 적 륜 (법정 200% 이하)	199.83%	건 폐 율 (법정 60% 이하)	59.07%
	조경면적 (대지면적의 28%)	650.94㎡	/법정 : 15% 이상	
	주차대수	총 43대	/법정 : 34대(200㎡ 당 1대)	
구 조		철근콘트리트구조, 철골구조		

[표3] 시설현황

층 별	면적(㎡)	용 도	비고
합 계	8,047.01		
4층	1,166.62	식당, 통합사무실, 세미나실, 요리 교실	
3층	1,236.04	사무실, 치매안심센터, 프로그램실, 소강당	
2층	1,186.82	장애인보호시설, 체력단련실, 데이케어센터	
1층	1,056.97	아이돌봄센터, 상담실, 배움터, 키움센터	
B1층	1,537.53	강당, 세미나실, 북카페, 다목적실, 방재실	
B2층	1,863.03	주차장(43대), 전기실, 기계실, 우수, 정화조실	

### 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축중인 “염리종합사회복지관”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임.
- 위탁운영 시설인 “염리종합사회복지관”으로 위탁기간은 시설 개소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, 위탁사무의 범위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임.
- 위 복지관은 염리3구역내에 연면적 8,047㎡ 약 2,438평 지하2층 지상 4층의 대규모의 시설로서 2021년 6월 준공되면 내년 7월부터 위탁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도 위탁운영비는 6개월 기준 1,45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.
- 주요 입주예정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, 데이케어센터,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키움센터 등이고, 공동 이용시설로는 강당, 세미나실, 프로그램 운영 시설, 요리교실, 식당 등으로 배치 할 예정임.
- 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유아, 아동부터 어르신,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복지 허브로써 우리 구민에게 One-Stop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일일평균 약 760명이 복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음,

- 관련 부서에서는 250억원이 넘는 막대한 건축비를 투입하여 건립한 대규모 종합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 시설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와 협의하고,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